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이 해결 방안 모색을 요청합니다

2023
제주 사회복지 현안 자료

2023

제주 사회복지 현안 자료집

2023

제주 사회복지 현안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법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제주
특별자치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이 해결 방안 모색을 요청합니다

2023

제주 사회복지 현안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법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제주지부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 목 차 -

○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소개	3
○ 2022 제주 사회복지 비전, 목표, 전략	7
○ 제주 사회복지 현안 (2023. 6월 현재)	
I. 공통현안	11
II. 직능단체별 현안	17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I 출 범 배 경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대응과정에서 민간 사회복지계는 더욱 화합하고 결속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의 현안에 대해서는 직종과 분야를 불문하고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낼 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경험한 우리는 민간 사회복지 현장이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이행추구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고 임기 중 실천을 요구하고 평가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을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II 조 직 구 성

1. 수석대표 : 고승화 회장(사회복지협의회)
2. 상임 공동대표 : 문성은 회장(사회복지법인협회) 김금자 회장(장애인복지시설협회)
3. 공동대표 : 수석대표 및 상임 공동대표를 제외한 포럼 참여단체 대표자 전원
4. 실무위원장 : 사회복지법인협회 강승동 사무국장
5. 실무위원 : 포럼 참여 직능단체 추천인 20명
6. 간사 : 김성건 사무처장(사회복지협의회)

Ⅲ 참여단체 및 대표단 · 실무위원 명단

연번	구분	단 체 명	공동대표단	실무위원회	
				성명	소속 및 직위
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수석대표)	김성건 (간사)	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2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	강봉남	도사회복지사협회 팀장
3	법 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법인협회	문성은 (상임공동대표)	강승동 (위원장)	도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국장
4	노 인 복 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협회	이재문	김유찬	노인요양시설 정효원 사무국장
5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협회	이성덕	박천광	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장
6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제주지회	김재경	박선미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부장
7	장 애 인 복 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문상익	부은숙	도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
8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양예홍	문상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9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김금자 (상임공동대표)	박주현	송향원 원장
10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이민숙	김남근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사무국장
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김영미	백유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원장
12	아 동 복 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강지영	이미숙	제주보육원 사무국장
1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허정례	안명희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장
14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김완숙	윤문희	제주몽생이그룹홈시설장
15	청 소 년 복 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제주지부	고민좌	윤인노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
16	여 성 복 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김산옥	한현진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 여성자활지원센터장
17	노 숙 인 복 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제주지회	김성자	김미옥	제주시희망원 사무국장
18	정 신 건 강 복 지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	박정해	김민범	무지개마을 사무국장
19	지 역 복 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	조영숙	표성주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부장
20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	김두선	손재연	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국장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출범 선언문

2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제주에는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비롯해 이혼율, 범죄율, 교통사고 발생 건수, 청소년의 자살률과 비만을 등 부정적 지표에서 수년 동안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과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 성찰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대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도지사가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지역 20개 사회복지 직능단체는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복지정책 제안 및 공약 반영 요구, 이후 공약실천 과정에 함께 할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출범을 선언한다.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하나,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제안한다.

둘, 우리는 각 복지영역의 손익을 떠나 제주 사회복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안한다.

셋, 우리는 깊이 있는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선의 복지정책을 하나된 목소리로 제안한다.

넷, 우리는 제안된 복지정책이 도지사 후보자들의 복지공약으로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다섯, 우리는 공약으로 반영된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책임을 다한다.

2021년 11월 5일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공동대표 일동

2022

제주 사회복지
비전, 목표, 전략

2022 제주 사회복지 비전, 목표 및 전략

I 비 전

민간과 공공의 효과적이고 상호대등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도민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를 비전으로 설정

II 목 표

- 기초가 튼튼한 지속 가능 복지 : 최소한 전국평균 수준의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균등한 처우 보장으로 안정적이고 건실한 사회복지실천 기반 마련 지향
- 도민을 위한 역동적 복지 : 제주특별자치도민 삶 전반에 대한 적정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전문성 있는 거버넌스 복지 : 공공과 민간의 복지실천 역량 제고로 상호신뢰하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복지협치 기반의 제도적 완성

III 실천전략

‘제주 사회복지정책 6대 핵심 아젠다,
33개 사회복지 분야별 아젠다’의 실현

비 전

도민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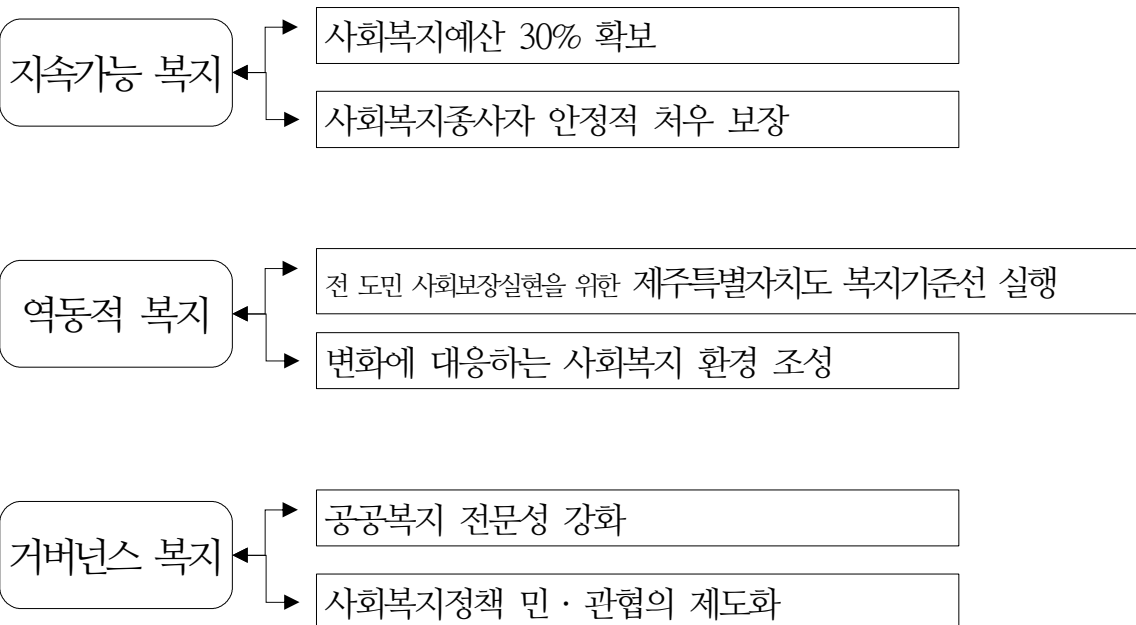
목 표

기초가 튼튼한
지속 가능 복지

도민을 위한
역동적 복지

전문성 있는
거버넌스 복지

전 략



2023. 6월 현재

제주 사회복지 현안

본 현안은 공통현안(2건)과
직능단체별 현안(13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직능단체별 현안자료는
제출된 자료 그대로
게재하였습니다.

I . 공 통 현 안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1. 문제점

- 가. 형평성 없는 기준 : 근무처의 유형에 따라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이 동일한 처우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나. 법률과 지침의 미준수 :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률 및 조례,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다. 현실 미반영 : 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영리성, 시설 근무자 채용과 고용안정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음.
- 라. 장기근속 환경 조성에 역행 : 종사자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각종 제한 규정 존재

2. 개정 필요 사항

가. 적용 범위 및 대상 확대

1) 요구사항

-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 제3조 규정 반영으로 적용 범위 및 대상 확대

- 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을 적용 대상에 포함

- 다) 가이드라인 명칭 개정(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2) 사유 : 법률 및 조례 준수, 사회복지현장 종사자 간 차별적 요소 제거.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고용안정 및 장기근속 환경 조성

3)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 제3조

4) 적용확대 대상

가) 법정단체 종사자 :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근거 사업 수행 인력

나. 직급별 정원 형평성 확보

1) 요구사항 : 동일 유형의 동일 규모의 시설인 경우 동일한 직급별 정원 배정
(시설별 정원표와 현원표 이중 관리, 사회복지사인 경우 최초 4급 부여)

2) 사유 : 동일 유형별 종사자간의 상대적 차별 요소 제거 필요

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 준수

1) 요구사항 :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을 준수하여 지급

2) 사유 : 관련 법률 및 지침 준수로 종사자 처우의 최저선 보장

3) 근거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에 관한 기준),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3.적용원칙)

라. 시설장 및 사무국장 최초 직급 부여 시 시설 규모 적용 삭제

1) 요구사항 : 자격을 갖춘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최초 임용 시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력 외에 시설 규모(종사자 수)에 따라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급여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규정 삭제

2) 사유 : 시설 규모(종사자 수)에 따라 최초직급 부여 기준을 달리 할 경우 경력자의 해당 시설에 대한 근무 기피 현상 예방

3) 근거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제6조(인정경력)

마. 승진 원칙 중 ‘바로 위 상위 직급 결원’ 조건 삭제

1) 요구사항

가) 직급별 정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 발생 하위 직급에서 승진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 삭제

나) ‘5인 미만 소규모 시설’인 경우 종사자가 승진소요연한을 충족할 경우 최대 2급까지 승진 허용

2) 사유 :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사적체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승진 기회 제한으로 종사자 사기 저하, 처우개선에 역행하고 있음.

3) 근거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제8조(승급 및 승진)

바. 기타 인건비 지급 관련 애로사항 해결

1) 요구사항 : 직원이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 지급하는 연가보상수당을 퇴사자 인건비로 확보된 예산에서 지급

2) 사유 : 퇴사자의 연가보상수당을 시설 자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3)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 이원화된 가이드라인 통합 운영

1) 요구사항 : 지방이양시설과 국비지원시설로 구분된 가이드라인을 통합

2) 사유 : 인건비 재원,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인건비지원 기준을 단일화하여 동일한 원칙과 기준, 해석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혼란 예방
(단, 정부지침 등으로 예외사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별도로 적용)

<근거 법률 ·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인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문제점

가.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재계약 관련 규정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을 근거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자의적 적용이 가능할 우려가 있음.
 - 이로 인해 운영법인이 지속가능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수립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한계가 있고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있음.

나. 사회복지시설 수탁 관련 조례의 혼란스러운 적용으로 시설 운영에 혼란 가중.

-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나,
 - 최근, 수탁 기간이 만료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조례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등을 적용(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다. 사회서비스원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무분별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 사회서비스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의 형태로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무분별하게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 의지가 있는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이 공개경쟁을 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음.

2. 개선방안

가. 현행 조례 개정

(1안) 사회복지 기본조례를 기준으로 위수탁 관련 제도 일원화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한하여 재계약과 관련된 규정(제7조 제3항)이 명확하게 제시된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반영하고,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운영 조례를 기본조례와 동일하게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관련 규정 일원화
- 위수탁자의 계약 갱신, 해지 등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규정 적용 가능성 차단
-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관계 없이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에 따른 형평성 제고

(2안) 시설 유형별로 제정된 설치·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

- 현재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숙인시설 등 각각 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위수탁관련 제도 운영의 혼란 해소
- 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절차 투명성 확보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위탁할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의 투명한 제도적 절차 마련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수탁 법인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함.

II. 직능단체별 현안

연번	직능단체명	현안사항	비고
1	지역아동센터연합회	- 종사자 호봉제 실현 - 차량 동승보호자 인력 지원 - 추가인력지원 - 안정적인 제주형 아동 통합 돌봄 서비스 구현	P.18
2	아동복지협회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원칙 준수 신중 필요	P.19
3	노인복지시설협회	장기요양요원 임금수준 개선	P.20
4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	P.21
5	장애인복지관협회	- 정보화교육 강사 정원 배정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정원 배정	P.22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비율 확대	P.23
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협회	- 최종증전담반 제도 시행 선제적 대응 - 고령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 시설 기능 강화	P.24
8	장애인총연합회	- 장애인단체 운영비 증액 -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	P.26
9	정신요양시설협회	-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배제 - 중증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배제 -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 차별 - 장애인차량 스티커 발행 제외 - 기능보강 제도 개선	P.28
10	청소년쉼터협의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정책 부족	P.30
11	여성인권상담소시설 협의회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주거정책 필요	P.31
12	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 소규모그룹홈 입소이 기관사정 배제하고 입소 - 소규모그룹홈 임대료 지원	P.33
13	사회복지관협회	통합복지하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	P.34

가. 현안

-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차별 없는 호봉제 실현
- 2) 지속적인 차량 동승보호자 인력 지원 사업 지원
- 3)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촘촘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위한 추가인력지원.
- 4)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로 안정적인 제주형 아동 통합 돌봄 서비스 구현.

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해결방안)

- 1) ‘2023년 임금제 개편을 위한 호봉제 실시’ 안 조속한 시행 요구.
(현재 제주도청 아동보육청소년과에서 심의 중)
- 2) 2022년 11월 27일 부터 차량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 되어 2023년 1월부터 인력지원이 되었으나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부적합으로 탈락 되어 7월부터 사업이 중단될 예정으로 시급한 사업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사업지원 요구.
- 3) 2인 또는 3인 구조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평균 29명의 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육 지원 외 사무행정, 회계, 급식조리, 차량 운행 등의 과중한 업무 수행 등 어려움에 따른 추가 인력 지원 요구.
- 4) 지역아동센터 공간의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유휴 공간에 기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우선 설치 운영과 전·월세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안정화를 위해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가. 현안

2021년부터 아동학대조사 및 사후관리체계가 공적영역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내용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지만 원가정 보호원칙으로 인해 재학대 위험이 있음에도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가정복귀 때문에 부모의 재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학대 위험이 높은 가정은 원가정 보호원칙에 따른 보호가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해결방안)

- 1)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할때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선부른 판단으로 재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학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2)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 후 가정의 사례관리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3) 아동보호체계의 전과정이 공적영역에서 책임감 있게 관리되려면 시행초기인 현시점부터 현실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주길 바랍니다.

가. 현안

- 1) 노인요양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같은 돌봄 업무를 하더라도 아동 및 장애인 돌봄에 비해 저급한 노동으로 치부됨
- 2) 현재 노인요양시설 인력채용의 어려움으로 각 시설마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3) 제주지역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결과(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2021)에 따르면, 장기요양현장의 인력 수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임금수준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해결방안)

- 1) 위험수당 또는 안전수당 명목으로 신규 수당을 신설함으로써 임금수준 개선
- 2) 요양시설 종사자는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로 재조명되었고, 2020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지원 사업)에 기초하여 안전수당 지급이 가능함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2022,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 참조)

가. 현안

초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돌봄을 할 인력들은 점점 줄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후의 바램인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지역사회거주(Aging in Place)를 위해서 재가복지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재가복지 현장의 수행인력들은 노동의 강도는 점점 커지는 반면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의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줄여야하는 현장에서 끝까지 버텨낼 사명감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장을 떠나는 직원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 현장을 떠나는 직원들을 붙잡기도 어렵거니와 새롭게 맞이할 직원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

모든 복지사업이 그 사업의 입장과 처지에서 바라 볼 때는 경중을 떠나 해당 되는 사업이 제일 우선이어야 하고 제일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다보니 힘의 영향력에 의해 차별 아닌 차별의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같은 노인복지라고는 해도 입소와 재가는 또 다르다. 재가복지 현장의 수행인력들은 어르신 케어는 기본으로 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용이 필수이고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가진 어르신들을 만날 때 술하게 일어나는 감정까지 수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육체체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일차 현장에 있는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소리는 이기적인 소리가 절대 아니고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노후의 삶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케어의 손길이 필요함을 인지할 때 정당한 외침이고 당연한 주장이다.

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해결방안)

- 1) 지원받은 년도와 무관하게 노후화 된 차량을 차별 없이 교체 내지는 지원요함.
- 2) 다른 사업의 종사자들과 동등하게 처우 개선 해주시 바람.(인건비, 복지포인트...등)
- 3) 노인맞춤돌봄사업의 중간관리자 인건비 해결요청.
- 4)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인력들의 공통된 유니폼 마련필요.
- 5) 중복되는 유사 사업들을 만들어 한곳에 집중되게 하지 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업의 내용들을 확장시켜서 모든 어르신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가. 현안

- 1) 2004년부터 현재까지 5개 장애인복지관은 도청 정보정책과의 집합정보화교육사업을 수행 (각 복지관별 1명)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급여 정액(월 224만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분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월 220만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호봉승급도 되지 않고, 신분도 불확실하여 이직율이 매우 높고 신규채용도 어려워 교육 공백이 다반사임. 4차혁명시대에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더욱 전문성이 필요하고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반해 지원이 미비하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지침에 장애인복지관 정원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권고사항이 있는데, 2,000㎡ 이상은 40명 이상, 1,500㎡ 이상은 30~39명, 1,000㎡ 이상은 20~29명을 권고하고 있음. 현재 해당 건축물 규모의 복지관에 권고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여 사업수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해결방안)

- 1) 장애인정보화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개 장애인복지관에 정보화 교사 정원 1명씩 배정해 주기 바람.
- 2) 장애인재활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건축물 규모 대비 정원수 미달된 기관은 그 정원이 모두 채워질 때까지 매년 조금씩이라도 증원해 주기 바람.

가. 현안

- 1)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2) 그러나, 자율적 구매 촉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확실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의지가 있을 때 제주지역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율을 전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3) 현행 법률상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은 1%임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구매비율 1%에만 맞추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 1%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실정.
- 4) 국회에서도 구매비율을 3%로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

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해결방안)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비율 기존 1%에서 3%로 확대

가. 현안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최중증 전담반 제도” 도입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6월부터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임. 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낮활동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도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필요

2) 고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현황과 제언

- 보호자가 돌아가시거나 더 이상 돌봄이 어려운 경우도 여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치매에 걸리시거나 정신장애가 심해져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나 선택지가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버티고 계시는 경우도 있음.
- 고령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가장 기본에 있다고 보여짐.
- 낮시간 어느 곳에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주거에 대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
-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 (그룹홈)가 마련되고 낮에는 주간보호에서 밤과 주말에는 가정과 같은 소규모 주거시설이 필요함.

3)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과 제언

-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상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지원필요
- 배변, 위생관리, 섭식지원 등의 1차원적인 서비스
- 프로그램지원의 방향성을 기본 일상 지원과 활동 프로그램의 균형을 신중
- 복합적인 신체의 장애로 인해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 등의 의료 인력이 필요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 상 이동 시 휠체어 탑승 차량이 필요
-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자기 결정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병행

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해결방안)

1) 최중증 전담인력 배치 및 환경조성을 위한 도비 지원

- 2022년 보건복지부 연구에서 “도전적행동이 심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3명당 지원인력 2인이 필요하다” 는 결론을 도출함. 따라서 주간보호센터에 추가인력지원이 필요하며, 타 사회서비스 영역의 인력지원과 같은 연계가 필요함(예 : 서울지역은 중장년 서비스인력을 같이 운용하고 있음)
- 또한 현재 공간에 최중증반을 구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함.

2) 제주도가 전담 또는 특화 지정 시 역할

- 다양한 전담 및 특화시설이 생길 때 활용 가능한 주간보호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현재 지침상에 있는 지원자 수와 공간의 크기를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예시 제공
- 지역별 전담 및 특화시설 설치 시 타지역 및 우수사례 정보제공
- 운영비 산정이나 지원자 수 등 다양하게 특화된 방식의 운영지원이 필요함.

가. (현안 1) 장애인단체운영비 예산 확대 및 인원확충에 따른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기준 인건비 부분 내용

- 장애인단체는 1단체 1인을 원칙으로 운영비 총액의 80%를 넘지 못함.
- 인건비 : 급여, 상여금,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등을 포함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기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법령의 명시적 근거 운영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제2항(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 필요경비 지원)

- 문제점

: 도내 장애인단체는 1단체 1직원으로 단체 운영이 매우 어려워 각 단체별 직원 1명 증원과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 그리고 현실에 맞는 단체운영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 오히려 운영비가 동결되거나 삭감되어 장애인복지 업무 수행 및 단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지원되는 인건비(운영비의 80%)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인건비 집행이 불가.

⇒ 따라서 장애인단체를 운영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와 인원확충 등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비 증액 편성요구.

나. (현안 2) 단체 종사자 안정적 처우 보장

○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역별 편차 해소 필요

- 장애인단체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와 정책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처우는 장애인복지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자격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장애인단체장을 필두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의 소통하며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도내 장애인단체는 산하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산하 시설직원과 단체 직원의 처우가 달라 단체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하고 근무하는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법인인 단체는 단체마다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도 단체 운영비지원에서 인건비는 어떠한 기준이 없이 한정된 예산에서 한정된 범위내 집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단체 직원 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단체직원들과 산하 시설 직원인건비 기준을 동등하게 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 보장 요구. (※현재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가. 현안

1)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배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0조)관련 하여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대상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규정에 의한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근로 장애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자들은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2) 중증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배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215호)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인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거주시설 퇴소시 주거지원 및 정착자립금 지원 등 조례에 의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은 정신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음.

- 정신요양시설 등 거주시설 퇴소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배제: 자립정착금 1천만원

3)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에서의 차별

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31)에 의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자립정착지원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 자립정착지원비(다만, 1년에 한하여 50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1년을 추가지원 할 수 있다.)

나) 정신요양시설 입주자 및 정신재활시설의 회원의 경우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제외

: 월 22만원(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만 지원)

4) 장애인차량 스티커 발행 제외

- 장애인·노인·임산 등의 편의증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스티커,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 받게 되어 있으나 정신건강복지법 적용 받은 기관의 경우 발부가 거부되어 병원진료 등 위급 상황 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지 못함.

5) 기능보강 지원기준안 수정요청(건의)

가) 지원기준 적용제외 : 도 및 행정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도비)를 전년도 지원받은 시설은 당해 연도 포함 3회계연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불가

나) 수정 요청(건의)

(1) 변경 필요성

- 규모가 큰 사회복지 기관의 경우 소규모 시설에 비해 수리 및 개보수 할 곳이 자주 발생하며 본 시설의 경우 6개의 개별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각의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함
- 또한 기관 노후(1990년 건축)와 장비 노후화로 보수 및 수리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시설 규모 및 연혁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2) 변경 요청(건의) 내용

- 시설 규모에 맞게 지원금액 조정 필요함
- 입소자 50인 이하 시설: 50,000천원
- 입소자 50인 이상 ~ 100인 이하 시설: 100,000천원
- 입소자 100인 이상 시설: 150,000천원

가. 현안

- 1)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은 큰 차이가 없음.(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정해체, 방임)
- 2)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비교해봤을 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3) 제주특별자치도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조례가 제정(2020. 6.)되었으나 자립정착금 500만원이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에 그침.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정착금(1,500만원)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시 장학금 지급 등 자립지원 현황을 비교해봤을 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정책이 부족함.

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해결방안)

우선 자립정착금의 상향이 필요하며 순차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지원정책과 비슷한 수준까지의 지원마련이 필요함.

가. 현안

1) 집은 인권이다.

집은 ‘의식주’의 하나로 개개인의 삶의 일차적 요소이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사회활동, 자아실현 등에 매진할 수 있으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이다. 사회복지 최일선은 <의식주> 문제인데, 그 중 ‘의식’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거’는 개인의 몫으로 시장경제에 방치해왔다.

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의 범죄는 여성 차별의 극단적 표현이다.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대한 각각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와 관련 법률이 제정된 것은¹⁾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명백한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선언한 것이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로서 고려되어야함을 의미한다.

3) 보호시설 입소한 피신한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폭력피해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집과 재산, 가족들을 모두 두고 탈출한 상황이며, 혼자 힘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범죄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 있더라도 가해자가 점유·이용하거나, 가해자 노출위험으로 인해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뿐더러, 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이주여성피해자 역시 경제적 약자일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도 전무한 상태라, 자력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다시 폭력 상황으로 되돌아가거나, 폭력피해 상황에서 탈출을 포기하기도 한다.

4) 특히, 여성폭력은 가족 또는 관계 내 권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는 가해자가 돈이나 경제력으로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성폭력피해자의 폭력피해상황과의 단절, 폭력의 되물림의 단절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피해자의 주거정책이 적극 필요하다.

1)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성매매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 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²⁾중 쉼터 입소자들이 퇴소 후 자립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주택지원 36.1%로 1순위며, 2009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시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피해자 욕구조사’³⁾에서도 쉼터 퇴소이후의 삶에 대해 ‘생계곤란(34.38%)’ 과 ‘거주지 곤란(31.25%)’ 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제주 지역 여성폭력피해자들의 자립관련 욕구조사⁴⁾에서도 주거정책, 전문직업훈련, 일정기간 경제적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6) 최근 3~4년 국가 주택정책은 청년,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주택정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나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주택정책은 대답없는 메아리처럼 소외되고 있다.
- 7)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지난 5월 도민 주거안정과 촘촘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 을 추진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도 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유형 및 입주계층 확대 등의 공동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천명한 바, 주택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여성폭력피해자의 주택공급정책’ 에 적극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해결방안)

- 1)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이주여성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해 폭력피해자로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거 취약계층으로 인정 요청함.
- 2) 주거정책 입주 계층 확대 시 여성폭력피해자까지 포함하여, 적극적인 주거정책을 시행하기 바람

2) 여성가족부 시행 2013

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9-21 연구보고서

4) 2015년 제주도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이주피해여성의 자립정책조사

가. (현안 1) 소규모그룹홈에 아동 입소시 기관사정을 배제하고 입소를 받음

-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은 제주시 아동보호팀에서 진행하는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결 된 아동으로 입소를 받고 있으나 전혀 그룹홈 기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새로 입소한 아동으로 그룹홈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기존 입소아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그리고 위원 중에는 개인시설이나 소규모를 이해하는 소속은 없어서 더욱 더 개인시설을 이해하는 기관장을 참여가 필요함.

(현안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 제주시청 내 아동보호팀의 사례결정회의를 실시할 때 기관장도 참여하여 아동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음.

나. (현안 2) 소규모그룹홈의 임대료지원 필요

- 소규모복지시설은 개인이 운영 및 관리하고 있고 주체도 개인이기 때문에 임대료도 기관 대표가 자비로 충당하고 있어 매해마다 발생하는 임대료로 큰 고충이 발생함.
- 타 지역은 현실적인 임대료 지원을 통해 시설의 안정화로 시설유지에 도움을 받고 있음. LH 연계로 임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그룹홈이 들어설 수 있는 규모가 없고 있더라도 외지라 아동들이 등하교에 큰 문제가 발생함.

(현안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 소규모 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임대료 지원 예산 확보 및 LH 연계 임대지원 절실.

가. 현안

- 1)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제34조와 관련하여 통합복지하나로사업이 시범단계를 거쳐 2023년도부터는 대상지역을 넓히고, 대상지역이 10개 종합복지관 관할지정 구역과 연계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진행과 관련된 추가 인력 및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관할지정 읍면동에서는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공통사례 및 자원연결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이어주는 시스템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속출되어 매끄러운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 2) 본 협회에서는 통합복지하나로사업에 대한 보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시스템개선 및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의 특성을 살릴수있는 선도사업들도 함께병 행함이필 요할듯 하 며 함 계공 존함에있 어각 읍면 동사례 담당공무 원들과의소통 (기본적인사업에 대한 숙지)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3) 통합복지하나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민. 관 공급자원을 하나로 모아 촘촘한 인적 안전망이 구축되고 그와 함께 보dana은 시너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요청한다 .

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해결방안)

- 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도 복지정책과 및 제주도내 복지관 관할 지정구역의 읍면동과의 소통의 매개체의 역할을 할 공개회의 및 업무관련 토론의 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인수인계(공무원 인사이동 시) 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유연하고, 끊임없는 복지서비스 연계(전달체계) 가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 2) 시스템 오류의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통사례의 추가적인 요소들(상호공유) 하지 못하고, 권한부여에 대한 오류들(공무원들의 권한부여 현황) 도 체크해야 할 부분인 듯 하다.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사무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T.702-3784 F.702-3383

[www. jejubokji .net](http://www.jejubokji.net)

jejubokji@hanmail.net